

## ■ 입후보자 자격

### (1) 지구 총재 입후보자 자격 (국제헌장 및 부칙 제9조 4항 및 지구헌장 및 부칙 제21조)

- ① 소속되어 있는 단일 또는 정지구의 굳 스탠딩 차터클럽의 굳 스탠딩 정회원이어야 하며
- ② 소속클럽 또는 단일 혹은 정지구 내의 과반수 클럽 추천을 얻어야 하며
- ③ 지구 총재로 선출될 지구의 현직 지구 제1부총재로 역임하고 있는 자
- ④ 현직 지구 제1부총재가 지구 총재로 출마하지 않을 경우 지구 제2부총재를 역임하고 있는 자

### (2) 지구 제1부총재 입후보자 자격 (국제헌장 및 부칙 제9조 6항 b, c 및 지구헌장 및 부칙 제22조)

- ① 소속되어 있는 단일 또는 정지구의 굳 스탠딩 차터클럽의 굳 스탠딩 정회원이어야 하며
- ② 소속클럽 또는 단일 혹은 정지구 내의 과반수 클럽 추천을 얻어야 하며
- ③ 지구 제1부총재로 선출될 지구의 현직 지구 제2부총재를 역임하고 있는 자

### (3) 지구 제2부총재 입후보자 자격

- ① 지구 제2부총재직을 이을 때까지 다음 직을 역임하거나 역임할 자
  - ㉠ 소속되어 있는 단일 또는 정지구의 굳 스탠딩 차터클럽의 굳 스탠딩 정회원이어야 하며
  - ㉡ 클럽 회장직을 역임하고 클럽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2년 이상 역임한 자로서
  - ㉢ 지대위원장, 지역위원장(지역부총재) 또는 사무총장, 재무총장 임기의 전부 혹은 반기 이상 역임하고 위의 직책 중 어느것도 겸임하지 않는 자

### (4) 지구 감사 자격 (지구헌장 및 부칙 제47조 ①항)

감사는 지대위원장 이상을 역임한 2인으로 정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.

### (5) 헌장이 정한 각종 의무금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은 클럽의 회원은 지구 총재·제1·제2부총재·감사 후보자로 입후보 할 수 없다. (지구헌장 및 부칙 제8조, 선거관리규정 제5조 ⑦항)

※ 특히 지구 총재·제1부총재·제2부총재·감사 입후보자가 있는 클럽은 입후보자 등록일까지 지구임원 의무금을 포함한 제반 의무금이 완납되어야 한다.